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8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김상훈 · 박충권 · 이현승
권영진 · 고동진 · 윤한홍
조지연 · 김재섭 · 김장겸
이달희 · 안철수 · 최보운
박대출 · 유용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7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로 하고,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정보의 확인요청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경우 불법대부행위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검사를 위하여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전기통신

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 보유 및 파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제9조의9제1항”을 “제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의9제3항을”을 “제9조의10제3항을”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제출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제9조의7(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정보의 확인요청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경우 불법대부행위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검사를 위하여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이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
준) (생략)

제9조의8(차별금지) (생략)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생략)

제1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
보유 및 과기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9조의8(대부업 이용자 보호기
준) (현행 제9조의7과 같음)

제9조의9(차별금지) (현행 제9조
의8과 같음)

제9조의10(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현행 제9조의9와
같음)

제1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p>1. ~ 3. (생략)</p> <p>4. <u>제9조의9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p> <p>5. <u>제9조의9제3항</u>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p> <p>③ ~ ⑤ (생략)</p> <p>제21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 10. (생략)</p> <p>③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9조의10제1항</u>----- ----- ----- -----</p> <p>5. <u>제9조의10제3항</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6의2. <u>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제출을 한 자</u></p> <p>7. ~ 10.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